소송 등의 판결·결정(2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기)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3. 판결·결정내용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3,013,011,71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판결·결정사유	피고의 집합투자기구 설정 상의 주의의무가 일부 인정되고, 원고가 분배금, 중도상환금, 자금관리수수료 명목으로 약 225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 현재 잔존 수익증권의 가치는 0원인 사실 등이 인정되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생 손해금 약 75억 원 중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6. 판결·결정일자	2020년 6월 19일
7. 확인일자	2020년 6월 19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심 판결에서 책임비율 70% 인정된 것에 비추어 당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2심 판결이 변경됨 (원고에게 가지급금 반환청구 예정)